



「학습공간」 운영 매뉴얼

1. 「학습공간」이란 ?

내 집 앞 아파트 · 작은 도서관 · 문화센터 · 종교시설 · 경로당 · 주민공동시설 등 지역 내 유휴시설을 이용해 주민들이 멀리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원하는 평생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말한다.

2. 「학습공간」의의

학습을 위한 시설을 새로 짓지 않고도 내 집 앞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유휴시설을 학습공간으로 지정해 전문가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강의능력이 뛰어난 지역주민을 강사로 배치하여 주민이 주민을 가르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조성 및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,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한다.

3. 학습공간 지정

- 학습공간의 지정은 작은 도서관, 아파트관리사무소, 종교시설, 주민 공동시설 등 지역 내 시설의 지정 신청 또는 동의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한다.
- 학습공간은 지역 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의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구성, 홍보, 학습자모집, 강좌운영 등 마을 단위 학습 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4. 학습공간 지원내용

- 매년 학습공간 운영 성과에 따른 심사를 통해 우선(차등) 지원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- 학습자 참여자 수·학습자 이수율 · 학습자 만족도가 높은 학습시설 (70% 이상 출석한 학습자 강좌를 이수한 자로 본다).
 -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강의능력이 뛰어난 지역주민을 강사로 배치하여 주민이 주민을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학습시설
 - 학습공간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습시설
 - 학습이수 후 학습자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결성 운영 및 학습 리더, 학습 매니저 양성 등 활발한 평생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학습시설
 - 학습동아리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공헌도 등

- 학습공간 지원은 구에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강사료로 지원된다.
- 학습공간 강사는 재능기부 강사를 우선적으로 선정 운영하되, 전문 강사의 경우는 1시간을 기준으로 30,000원의 강사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
- 학습공간 강의 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한정한다. (단, 확보된 예산 및 학습공간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)
- 강사료를 제외한 교재비, 재료비 등은 학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5. 학습공간 운영

- 금정구민 최소 10명 이상이 참여해야만 학습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.
- 학습공간의 강사(또는 운영 담당자, 학습매니저)는 프로그램 시작 전 금정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향후 강사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- 출석부는 반드시 매회시마다 학습 참여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.
- 강사료는 매월 프로그램 운영 후, 익월 5일까지 출석부 및 중간운영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학습공간별 청구에 의해 지급된다. (지급방법은 계좌로 입금한다.)
- 학습공간 실무자(강사)는 금정구 평생학습관 강사은행에 강사등록 후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.
- 강사는 강좌 종료 후 1주일 안으로 학습사진을 첨부한 운영결과 보고서 1부, 학습공간 강좌 설문지 1부, 출석부 원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
- 강사료 청구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우편 발송 또는 금정구청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.

6. 제한사항

- 학습공간 점검 시 2회 이상 경고를 받는 경우 학습공간 지정 해제를 통보한다.
 - 프로그램 계획과 달리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
 - 사전에 약속된 일정(운영기간, 시간, 요일 등)에 대해 지켜지지 않을 경우
 - 학습 이외에 개인적 또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학습공간을 운영 할 경우
 - 학습공간 지정 장소가 관외로 이전되거나, 관내로 이전 되더라도 학습 장소로 활용이 불가능 할 경우

- 신청 장소와 다른 곳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
 - 수강생 출석률 70%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
 - 기타 지속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
- 학습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시설에 대하여는 1년 이상 지정 정지 또는 지정 취소시킬 수 있다.
 - 프로그램 계획 변경은 1회에 한해서 변경이 가능하며, 사전에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프로그램 종료 후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다음 년도 학습공간 선정 시 패널티를 부여한다.